

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○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도봉구 제3선거구 박석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-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 부서장을 ‘분임개인정보보호책임자’로 지정하고
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 담당업무를 규정함으로써,
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
일선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및 유출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.
- 「개인정보보호법」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
‘개인정보취급자’의 정의, 개인정보 분실·도난·유출 시
통지·신고 시한을 72시간 이내로 명시하는 등
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